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수 조치에 관한 정책

결의안 제 2019-070 호

캘리포니아 수도 공급 차단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수도 공급 차단 절차 관련 시 정책을 채택한다는 내용의 리오 비스타 시의회의 결의안

주지사는 2018 년 9 월 28 일, 보건안전규정 제 116900 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수도 공급 차단 보호법을 성문화한 상원 법안 제 998 호에 서명하여 이를 법률로 제정했다.

수도 공급 차단 보호법은 리오 비스타 시가 이 법을 따르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오 비스타 시의회는 캘리포니아 수도 공급 차단 보호법에 따른 수도 공급 차단 절차와 관련하여 본 정책을 시의회가 채택하도록 결의하는 바이다.

A. 리오 비스타 시의 정책은 리오 비스타 지방자치법령 제 13.04.078 조와 캘리포니아 보건안전규정 제 116906 조에 따라 다음 납부 유예 및 감면 계획과 대체 납부 일정을 채택한다.

1. 납부 유예 또는 감면 계획.

a. 납부 유예 계획. 시는 고객이 2 회 이상의 청구 주기 내에 계정의 연체 금액을 해소하도록 마련된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납부 유예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할부 상환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b. 납부 감면 계획. 재정적 지불 불능을 증명한 고객은 납부 감면 계획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가계 소득이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ine, FPL)의 200% 미만임을 보여줌으로써 재정적 지불 불능을 증명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CalWORKs, CalFresh, 일반 보조, Medi-Cal,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ocial Security Income, SSI)/주 생활 보조 프로그램(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 영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현재 수급 중이거나 고객이 연 가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미만이라고 선언하는 경우, 고객은 연방빈곤선의 200%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다.

c. 고객이 가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미만임을 입증하는 경우, 시는 체납 청구서에 부과되는 이자를 12 개월에 한 번 면제해 줄 수 있다.

2. 대체 납부 일정. 시는 고객의 가정용 수도 요금을 균등 월납 요금으로 분할하거나, 시 재정 과장이나 담당자가 개별 사례의 상황을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대체 납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B. 리오 비스타 시의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가정용 수도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은 리오 비스타 지방자치법령 제 13.20.150 조에 규정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가정용 수도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 고객은 리오 비스타 시 공공사업부 과장(707-374-6451, 내선: 1116)에게 문의하여 미납으로 인한 가정용 수도 단수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D. 본 정책은 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 본 정책 또는 조례 제 009-2019 호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보건안전규정 제 116900 조 이하에 성문화되어 있는 수도 공급 차단 보호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시 규정, 정책 또는 법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법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F. 고객이 체납 중인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1. 고객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경우, 시는 고객에게 미납으로 인한 가정용 수도 단수 조치에 관한 시의 서면 정책을 발송하고, 본 정책과 보건안전규정 제 116908(a)(1)(B)호에 규정되어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의 수도 서비스 중단 방지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

2. 고객에게 서면 통지서로 연락하는 경우, 해당 통지서는 고객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주소가 고객의 주소와 다른 경우 통지서는 해당 부동산 주소의 '입주자'에게도 발송된다. 통지서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체납 총액, 가정용 수도 단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납부 기한이 기재되어 있고, 체납액 납부 연장 신청 방법, 청구서 검토 및 이의 제기 청원 방법, 시 정책에 규정된 기타 납부 방안 신청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3.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을 할 수 없고 서면 통지서가 송달 불가로 반송되는 경우, 시는 고객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미납으로 인한 가정용 수도 단수 임박 통지서와 가정용 수도 단수 조치에 대한 시의 정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기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한다.

G. 리오 비스타 시는 미납으로 인한 연간 가정용 수도 단수 건수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이를 보고한다.

H. 리오 비스타 시는 본 정책에 따라 모든 서면 통지서를 영어,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Civil Code) 제 1632 조에 규정된 언어 및 고객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한다.

I. 본 정책 및 해당 지방자치법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리오 비스타 시는 고객의 허가되지 않은 행위가 있을 경우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2019년 12월 3일 통과 및 채택됨. 본인, JOSE JASSO는 리오 비스타 시 서기관으로서, 상기 결의안이 리오 비스타 시의회 정기 회의에 상정되어 다음과 같은 호명 투표 결과에 따라 통과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찬성자: 시의원 Dolk, Hampton, Roos, 부시장 Cohn
및 시장 Kott

반대자: 없음

불참자: 없음

기권자: 없음

증인:


Jose Jasso, MMC, City Clerk



Jose Jasso, MMC, 시 서기관